국제중재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986년 외국중재판정법에서 1994년 국제중재법까지

싱가포르의 현대 중재법은 두 단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첫 단계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6년 8월 21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협약은 1986년 11월 19일 싱가포르에 대해 발효되었으며, 싱가포르는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만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를 붙였습니다. 협약은 같은 날 시행된 1986년 중재(외국판정)법(Arbitration (Foreign Awards) Act 1986)으로 이행되었습니다.[1]

두 번째 단계는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회는 1994년 10월 31일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1995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2] 이 법은 외국중재판정법을 Part 3에 흡수하고, 국내 중재와 구별되는 국제중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중재는 오늘날 2001년 중재법(Arbitration Act 2001)이 규율합니다.[3] 이 시기는 의미가 컸습니다. 경제개발청(EDB)은 20년 동안 지역 본부와 무역회사를 유치해 왔으며, 이는 이 책의 제G편에서 다룹니다. 이들 기업은 아시아 사업과 가까운 곳에 중립적인 법정이 필요했고, 입법부가 이제 그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모델법과 국제중재의 정의

이 법의 핵심은 section 3(section 3)입니다. 이 조항은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제VIII장을 제외한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에 싱가포르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1985년 6월 21일 UNCITRAL이 채택한 모델법은 제1부속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4] Section 4는 법원이 UNCITRAL과 그 작업반의 문서를 참조하여 모델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공통의 국제 문서를 따르는 중재법을 가진 법역군에 합류했습니다. 외국 변호사는 현지의 특수성을 따로 연구하지 않고도 그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제중재에 적용됩니다. Section 5는 다음의 경우 중재를 국제적인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한 당사자의 영업소가 싱가포르 밖에 있는 경우, 중재지 또는 의무의 상당 부분이 이행될 장소가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국 밖에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분쟁 대상이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국내 중재의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국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5] 싱가포르 기업들은 국제 체제의 보다 제한적인 법원 감독을 선호할 때 이 선택권을 활용합니다.

당사자 자치와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 법은 당사자 자치에 대한 존중과 중재판정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결합합니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section 6은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이행 불능인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절차를 중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11조는 당사자들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모든 분쟁은 공서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로 판단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이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이 중재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2019년부터 이 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6]

Section 12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열거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송비용 담보, 문서 및 사실의 개시, 선서진술서에 의한 증거, 분쟁 대상 재산의 보전 또는 매각, 증거 보전, 청구 금액에 대한 담보, 자산 은닉 방지 조치, 임시 금지명령, 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밀유지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싱가포르 밖에 거주하거나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외국 이용자를 안심시킵니다.[7] 이 법은 중재판정부에 기관 규칙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이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긴급중재인의 명령도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8]

이 법은 제도를 작동시키는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중재인은 과실이나 법률, 사실 또는 절차에 관한 착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선정권자와 기관은 악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들 자신의 선정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중재인을 선정하는 법정 기관은 SIAC 중재법원(SIAC Court of Arbitration)의 원장입니다.[9]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와 그들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를 구속합니다. 고등법원(High Court)의 허가를 받으면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10]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개정

이 법은 대체로 실무가들의 제안과 경쟁 중재지의 동향에 대응하여 자주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9년, 2012년, 2020년에 개정법이 통과되었고, 법원 개혁과 다른 법률에 따른 부수적 개정도 있었습니다.[11] 각 개정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09년 개정은 고등법원이 중재지와 관계없이 중재를 지원하는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런던이나 홍콩에서 진행되는 중재의 당사자도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12] 2012년부터는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그 판단을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모델법만으로는 관할권을 인정한 판단만 이런 방식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13]

2021년의 법원 개혁은 중재 관련 법원 절차의 취급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누군가의 신청에 따라 공개 심리를 명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심리됩니다.[14] 이로써 이용자들이 중시하는 비밀유지가 법정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까지 확장됩니다. 판결은 보통 익명화된 형태로 공개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주요 판례들 상당수가 *DJP v DJO*나 *BCY v BCZ*처럼 알파벳 부호를 사건명으로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의 개혁 논의

2025년 법무부(Ministry of Law)는 새로운 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분쟁해결아카데미(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에 중재 체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2025년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여덟 가지 질문에는 중재판정 취소 후의 비용 명령,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의 허가 요건, 사기 또는 부패를 이유로 한 이의 제기의 3개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 선택적 법률문제 항소,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법정 규칙, 약식 처분에 관한 명시적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15]

이 제안들은 싱가포르가 중재법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정부는 경쟁 중재지, 특히 2025년 영국 중재법(English Arbitration Act 2025) 이후의 런던을 주시하며, 이용자가 불리함을 느끼기 전에 법률을 조정합니다. 2026년 5월에 발표된 한 검토는 의견수렴 이후 추가 조치나 발표된 개정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16] 따라서 이 장에서 설명하는 법은 2025년 3월 9일부터 시행 중인 통합본 형태의 국제중재법입니다.

주

1. UNCITRAL, 뉴욕협약 현황표(uncitral.u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 1986년 8월 21일 가입, 1986년 11월 19일 발효, 상호주의에 관한 선언 (a); 당사국 총 172개국;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2020 Rev Ed, 2025년 3월 9일부터 시행 중인 비공식 통합본), Legislative History, 항목 1: Act 24 of 1986, 1986년 11월 19일 시행. ↩

2.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Legislative History, 항목 3: Act 23 of 1994, 1994년 10월 31일 제2독회 및 제3독회, 1995년 1월 27일 시행.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5(4)(Arbitration Act 2001 적용 배제) 및 Part 3, ss 27–33(외국 중재판정). ↩
4.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3(1) 및 s 2(1), "Model Law"의 정의. ↩
5.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5(1)–(3). ↩
6.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s 6(1)–(2) 및 11(1)–(2);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26B,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 (Act 23 of 2019)에 의해 신설, 2019년 11월 21일 시행. ↩
7.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12(1)(a)–(j) 및 (4); 비밀유지에 관한 (j) 호는 Act 32 of 2020에 의해 추가됨. ↩
8.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2(1): "arbitral tribunal" "includes an emergency arbitrator appointed pursuant to the rules of arbitration agreed to or adopted by the parties". ↩
9.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s 25, 25A 및 8(2)(모델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SIAC 중재법원 원장). ↩
10.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s 19 및 19B(1). ↩
11.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Legislative History, 항목 5–20: Acts 38 of 2001, 28 of 2002, 26 of 2009(2010년 1월 1일 시행), 12 of 2012(2012년 6월 1일) 및 32 of 2020(2020년 12월 1일); 2020 Revised Edition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적용. ↩
12.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12A(1)–(4), Act 26 of 2009에 의해 신설: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lace of arbitration is in the territory of Singapore" 적용. ↩
13.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10(2)–(3), Act 12 of 2012에 의해 개정. ↩
14.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22(1)–(2), Act 25 of 2021에 의해 개정, 2022년 4월 1일 시행.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5. Allen & Gledhill, “MinLaw seeks feedback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im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2025년 4월 4일: SIDRA 연구에 기초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의견수렴; UK Arbitration Act 2025를 참조하여 여덟 가지 쟁점 제시. ↩

16.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2027*, “Singapore arbitration updates: IAA reform proposals and key court decisions from 2025–2026”(2026년 5월 14일): 여덟 가지 쟁점에 관한 SIDRA 보고서, 법무부 의견수렴, 추가 진전 및 발표된 개정 없음.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